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6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 3. 31.
4. 회부일자 : 2025. 4. 2.

II. 제안이유

-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2025년 총액인건비 보강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 교육부에서 확정통보한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수와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치시키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51명 (7,876명 → 7,927명)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증 32명 (7,128명 → 7,160명)

- 교육전문직원

- : 증 19명 (742명 → 761명)

2.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51명 (7,876명 → 7,927명)

- 일반직 정원 조정: 증 32명 (7,125명 → 7,157명)

- 5급 이하 소계: 증 32명 (7,040명 → 7,072명)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9명 (742명 → 761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 : 증 19명 (691명 → 710명)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별첨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별첨 1] 비용추계서

3.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타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
임

나. 입법예고(2025. 3. 12. ~ 2025. 3. 24.) 결과: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별첨 2〕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마. 성별영향분석평가:〔별첨 3〕제외통보 확인서

바. 학생인권영향평가:〔별첨 4〕검토의견 통보서

사. 관계법규:〔별첨 5〕「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668호로 제출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유보통합을 위해 증원 확정된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총수와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 및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 총수와 일반직 공무원, 교육전문직 정원을 각각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 제2조 본문의 정원 총수 7,876명을 51명 증원한 7,927명으로, 같은 안 제2호 공무원 정원 7,128명을 32명 증원한 7,160명으로, 같은 안 제3호 교육전문직 정원 742명을 19명 증원한 761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별표3]은 이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을 증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정원의 증가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서울의 경우 51명 증원된 (일반직 32명, 전문직 19명) 총액인건비를 확정산정하였고,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¹⁾.

1)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2025.1.14.). 2025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행정직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 교육행정기관의 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²⁾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³⁾의 범위내에서 제13조⁴⁾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조례⁵⁾로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동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증원된 일반직 및 전문직 정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정원 총수 또한 반영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원 조정은 법령상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유보통합 보강인력의 인력배치 계획안⁶⁾에 따르면, 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을 제외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인력에 대해 어린이집 교육과정 및 교직원 연수 등을 지원하

2)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3)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2025.3.). ‘유보통합 순증 정원 관련 2025년 지방공무원 인력 배치 계획(안)’ 재구성

는 것으로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표-2] 참조).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3법⁷⁾’이 우선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해당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 따라서 금번 증원된 인력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안과 같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바,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유보통합 보강인력 배치 및 주요 업무 현황

구 분	조직	주요 업무	인력 배치
본 청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교육기획팀, 유보통합추진1팀, 유보통합추진2팀)	· 유보통합 업무 총괄 ·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추진 · 자치구 보육 조직, 정원, 사무, 재산 등 이관 추진 방안 기획·총괄 · 통합연수체계 마련 총괄·기획 · 교육·보육과정 운영 등	· 전문직 5명 · 일반직 15명
	특수교육과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 추진 등	· 전문직 2명 · 일반직 2명
직 속 기 관	유아교육진흥원	·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및 지원 · 어린이집 영유아 체험학습 운영지원	· 전문직 1명
교육 지원 청	교육지원국 (교육지원청별 1명)	· 어린이집 교육과정지원(이음, 거점돌봄 등)	
	행정지원국 (교육지원청별 1~2명, 관내 어린이집 수가 많 은 지원청 우선 추가 1 명 배치: 남부, 강동송 파, 서부, 강서양천)	· 25개 자치구청 보육 사무·재정·인력 분석	· 전문직 11명 · 일반직 11명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겠습니다.

7)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2205079, 제안일자: 2024.10.30.)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05081, 제안일자: 2024.10.30.).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05080, 제안일자: 2024.10.30.).